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문서번호	HW-SHI-813
		개정일자	2022.08.01
	위험물관리 지침	개정번호	0
		쪽 번호	2 / 3

1.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저장, 취급되고 있는 위험물의 사용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지침서는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의 관리 절차를 정하고 위험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여 종업원의 생명, 신체 및 회사의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위험물

소방법에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을 말한다.

3.2 지정수량

위험물의 품명 및 품목별 위험성의 강도에 따라 지정하여 놓은 수량을 말한다.

3.3 위험물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에는 건축물, 탱크, 보유 공지 및 부속설비가 포함된다.

3.4 옥내저장소

창고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3.5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3.6 소량위험물저장소

지정수량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인전보건관리부서장

4.1.1 소방법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4.1.2 위험물 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4.1.3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비상사태 대비 대응 절차서에 따라서 작업자를 지휘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소방서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연락할 책임이 있다.

4.1.4 위험물 저장소의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1.5 그 밖의 위험물 취급에 있어서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4.2 해당부서장

4.2.1 해당부서의 위험물 저장, 취급에 관한 안전 관리 및 감독할 책임이 있다.

4.2.2 위험물 저장소의 신, 증설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즉시 안전보건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2.3 위험물의 유지관리에 있어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 할 책임이 있다.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문서번호	HW-SHI-813
		개정일자	2022.08.01
	위험물관리 지침	개정번호	0
		쪽 번호	3 / 3

4.2.4 해당부서에서는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위험물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4.2.5 관리책임자 임무

- 1) 위험물저장소에서는 허가품명 및 수량 이외의 위험물 저장은 취급하지 못하게 한다.
- 2) 저장소, 취급소에는 함부로 화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3) 저장소, 취급소에는 불필요한 가연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 4) 기타 위험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며 관련법, 규정을 준수토록 한다.

5. 업무절차

5.1 사용허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위험물 저장소 인허가 관리 기준에 준하여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2 설치허가의 취소 사용정지

안전보건관리부서는 위험물 저장소의 허가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는 위험물 저장소의 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 5.2.1 화재 예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5.2.2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에 위반되는 때
- 5.2.3 위험물 저장소별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때

5.3 위험물 정기 점검

- 5.3.1 위험물 및 위험물 저장소 저장, 취급 관리부서에서는 그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하여야 한다.
- 5.3.2 안전보건관리부서는 위험물 및 위험물 저장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위험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불량시설에 대하여는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 5.3.3 불량시설을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안전보건관리부서로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5.4 지도감독

안전보건관리부서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의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이 지침서의 이행여부와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관련 규정

- 6.1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규정
- 6.2 소방법
- 6.3 위험물안전관리법